

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 : 2025. 4.

발 의 자 : 최훈종 의원

1. 제안이유

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환경오염 등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(폐기물 임시보관장소,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포함) 건축물에 대한 입지 기준 마련.

2. 주요내용

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(안 제19조의2)

-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(폐기물 임시보관장소,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포함) 승인으로 인한 인근 주거지의 주거환경 악화, 환경오염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입지 기준 마련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, 높이,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,

-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시설로 발생하는 소음, 먼지, 침출수 유

출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고, 주민 간 갈등 유발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로

-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.